

의안번호	2212336
의 퇴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5.10.23.
추계번호	25D45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을 기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범위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로 확대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범위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로 확대함	의무규정
4	안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화 대상을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5	안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성요소에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동 플랫폼에 제공·연계될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6	안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함	의무규정
7	안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기존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변경하고 수행업무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8	안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기존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로 확대함	의무규정

9	안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기존 실태 점검 및 평가 범위를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0	안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 사례의 발굴·보급 등)	기존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대상을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1	안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존 전문인력 양성 대상을 데이터 관련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2	안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기존 민간 및 국제 협력 사업의 범위를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3	안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 협회의 설립)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단계를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15	안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32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미대상: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각 기관이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공유·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5년 53억 9,200만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금)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참고자료]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주요 내용																																										
2	안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또한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5년 기준 150억 800만원의 예산(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2046-503))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예산(2046-503) 세부내역]																																										
3	안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단위: 백만원)																																										
4	안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table><tr><th colspan="2">구분</th><th>2025년 예산</th></tr><tr><td rowspan="5">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td><td>정책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td><td>1,257</td></tr><tr><td>빅데이터 신규 분석 추진</td><td>2,086</td></tr><tr><td>AI기반 현안 해결형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td><td>1,760</td></tr><tr><td>표준분석모델 개발 및 확산</td><td>693</td></tr><tr><td>소계</td><td>5,796</td></tr><tr><td rowspan="3">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td><td>국가공유 DB 구축</td><td>6,323</td></tr><tr><td>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td><td>1,159</td></tr><tr><td>소계</td><td>7,482</td></tr><tr><td rowspan="3">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td><td>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추진</td><td>1,105</td></tr><tr><td>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및 기반 조성</td><td>374</td></tr><tr><td>소계</td><td>1,479</td></tr><tr><td rowspan="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운영</td><td>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td><td>95</td></tr><tr><td>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정책수립</td><td>63</td></tr><tr><td>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연구</td><td>90</td></tr><tr><td>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경비</td><td>3</td></tr><tr><td>소계</td><td>251</td></tr><tr><td colspan="2">총 계</td><td>15,008</td></tr></table>	구분		2025년 예산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	정책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1,257	빅데이터 신규 분석 추진	2,086	AI기반 현안 해결형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1,760	표준분석모델 개발 및 확산	693	소계	5,796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국가공유 DB 구축	6,323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1,159	소계	7,482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추진	1,105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및 기반 조성	374	소계	1,47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운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	95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정책수립	6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연구	9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경비	3	소계	251	총 계		15,008
구분		2025년 예산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	정책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1,257																																										
	빅데이터 신규 분석 추진	2,086																																										
	AI기반 현안 해결형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1,760																																										
	표준분석모델 개발 및 확산	693																																										
	소계	5,796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국가공유 DB 구축	6,323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1,159																																										
	소계	7,482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추진	1,105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및 기반 조성	374																																										
	소계	1,47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운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	95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정책수립	6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연구	9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경비	3																																										
소계	251																																											
총 계		15,008																																										
5	안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6	안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7	안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 분석센터)																																											
8	안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																																											
9	안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10	안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 사례의 발굴·보급 등)	- 개정안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까지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신규로 편성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2039-506)’ 세부사업과 기존 ‘데이터 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2046-503)’ 세부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미대상에 해당
11	안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12	안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13	안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14	안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5	안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16	안 제32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2. 상세 사유

□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안 제26조)

- 개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 설립 및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운영 방향 및 지원 사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안 제28조)

-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동법에서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되는 범위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 위탁 방법, 사업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안 제32조)

-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동법에서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되는 범위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여부, 방법,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 행정안전부는 ‘공공AI 영향평가제도 추진방향과 영향평가 세부설계 및 제도화방안 연구용역’(~2026년1월) 이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 단계별 시행을 계획 중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go.kr

[참고자료]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주요 내용

○ 개념 및 활용 분야

- (개념) 보안성이 보장된 별도 영역*에서 민간의 초거대 AI 모델 등을 범정부적으로 활용 가능한 초거대 AI 플랫폼을 구현, 각 기관은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기획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CSAP 상등급 클라우드 등

- (활용 분야) 보도자료·연설문·회의록·민원답변서 등 문서의 초안 작성, 긴 내용의 문서 요약, 법령·판례 검색 등 일반업무나, 홍보, 예측, 도면분석 등 전문분야에 활용

○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로드맵(예정)

- (`24)BPR/ISP → (`25)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등) → (`26~)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확대운영 및 기관별 특화 서비스 운영 등

○ BPR/ISP 사업 주요 추진과제

* 사업기간/예산: 4~10월 / 12.57억원(KLID 위탁 및 NIA 협업 등)

- (민간 서비스 도입방식 검토) 내부 구축, 민간 클라우드 활용 등 도입방식 검토 및 민간 초거대 AI 모델 등 도입·운영에 따른 고려사항* 검토

* 민간 서비스 활용에 따른 이용료 산출방안, AI 모델 업데이트에 따른 현행화 등

- (초거대 AI 공통기반) 각 기관이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환경 및 서버 인프라를 갖춘 범정부 공통기반 플랫폼 마련

* AI 모델,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등

* 초거대 AI 개발기업은 여러 기업들이 특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중

- (데이터 공유·관리체계) 기관별 서비스 구현에 활용된 초거대 AI학습용 데이터 공유·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 AI모델 업데이트에 따른 재학습 등에 활용

- (지능형 업무관리) 업무환경을 웹오피스*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협업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AI와의 협업을 통해 문서 작성, 유사문서·법령·지침 검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 구글 워크시트 등과 같이 업무관계자 간 동시 문서작업을 지원하며, 온메일·영상회의·G드라이브 등 개별 시스템과의 연계·활용

**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첫 사례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예정

자료: 행정안전부